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1.11.30.) 후 시행('22.6.1.)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수급권자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안 제6조의2 신설)

-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
-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되,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 본인의 확인을 거쳐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

나.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대상 채권의 기준금액 설정(안 제6조의3 신설)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

<신 설>

<신 설>

<신 설>

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

<u>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u> <u>전액을 말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1796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연락처	(044) 200 - 5471